

## 1.1 이 사 회 규 정

제정 : 1981. 12. 18.

개정 : 1998. 03. 01.

2000. 07. 01.

2006. 12. 01.

2016. 08. 08.

2021. 03. 25.

2022. 02. 23.

2022. 07. 15.

2023. 07. 01.

2025. 08. 14.

# 목 차

## 제1장 총 칙

- 제 1조 (목 적)
- 제 2조 (적용범위)
- 제 3조 (권 한)
- 제 4조 (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)
- 제 5조 (충실의무)
- 제 6조 (책 임)

## 제2장 구 성

- 제 7조 (구 성)
- 제 8조 (의 장)
- 제 9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## 제3장 회 의

- 제10조 (종 류)
- 제11조 (소집권자)
- 제12조 (소집절차)
- 제13조 (결의방법)
- 제14조 (질서유지)
- 제15조 (부의사항)
- 제16조 (위 임)
- 제17조 (긴급집행)
- 제18조 (감사의 출석 등)
- 제19조 (관계인의 출석)
- 제20조 (직무집행감독)
- 제21조 (이사회 의안)
- 제22조 (간 사)
- 제23조 (의 사 록)
- 제24조 (규정의 개폐)

## 부 칙

# 이사회규정

## 제 1장 총 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디엘건설 주식회사 이사회(이하 "이사회"라 함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-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그 사안에 대하여 그 집행의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이사회는 그 결의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### 제4조 (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)

- ① 사외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응해야 한다. 다만 회사의 중요한 기밀사항의 요청은 사외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.
- ②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, 법률고문 등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때 소요된 비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.

### 제5조 (충실의무)

- ① 이사는 회사 및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회사가 속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이나 특정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 또는 전체 주주에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 승인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.
- ③ 이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### 제6조 (책임)

이사 또는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## 제 2장 구 성

### 제7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 및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### 제8조 (의장)

-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이 된다.
- ② 의장이 유고시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9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 1.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- ⑥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⑦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## 제 3장 회 의

### 제10조 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 제11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12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그 1주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- ③ 소집권한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한 이사는 간사의 조력을 받아 이사회에 상정될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
### 제13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

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14조 (질서유지)

- ① 의장은 이사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,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②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의 발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#### 제15조 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   - 가. 주주총회의 소집
    - 나. 영업보고서의 승인
    - 다. 재무제표의 승인
    - 라. 정관 변경
    - 마. 자본의 감소
    - 바.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    - 사.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
    - 아.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    - 자. 이사, 감사의 선임 및 해임
    - 차.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
    - 카.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    - 타. 주식배당 결정
    - 파.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
    - 하. 이사, 감사의 보수
    - 거.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  - 2. 경영에 관한 사항
    - 가.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

- 나.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- 다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라. 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(삭제)
- 마. 공동대표의 결정
- 바.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사.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아.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- 자.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차.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
- 카. 중요한 사규, 사칙의 제정 및 개폐
- 타.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
- 파.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하.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거. 기타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 경영사항

### 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가. 투자에 관한 사항
- 나. 중요한 계약의 체결
- 다.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- 라. 결손의 처분
- 마.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- 바. 신주의 발행
- 사. 사채의 모집
- 아. 준비금의 자본전입
- 자. 전환사채의 발행
- 차.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카.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
- 타.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- 파. 건별 자본총계의 5% 이상 회사채의 발행
- 하. 건별 자본총계의 5% 이상 국내외 금융기관을 통한 기채사항 및 그  
기간의 연장 (또는 외부기관 요청 시)
- 거. 공사수행과 관련한 건별 자본총계 2.5% 이상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 사항  
(또는 외부기관 요청 시)
- 너. 계열회사를 위한 책임준공계약 체결
- 더. 기타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 사항

4. 이사에 관한 사항
  - 가. 이사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  - 나. 타회사의 임원 겸임
5. 중요한 인사, 노무에 관한 사항
6. 기타
  - 가. 중요한 소송의 제기
  - 나.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  - 다.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
3.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성과 검토
4. ESG에 관한 사항
  - 가. ESG 주요 분야 추진 방향 및 성과
  - 나. ESG 의무 공시 사항
5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#### 제16조 (위임)

- 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회의 결의로서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-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에게 당해 사항의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.
- ③ 전항의 위임에 따른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

#### 제17조 (긴급집행)

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사전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 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# 제18조 (감사의 출석 등)

-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 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.

#### 제19조 (관계인의 출석)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# 제20조 (직무집행감독)

- ① 의장은 각 소관업무 담당임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#### 제21조 (이사회 의안)

이사회 심의안건은 당해 안건의 담당임원이 이사회 주관부서에 1일 전에 제출한다. 단, 긴급안건은 예외로 한다.

#### 제22조 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이사회 주관부서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#### 제23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간사가 의사록을 작성하고,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② 의결에 참석한 이사로서 이의가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#### 제24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.

## 부 칙

1. (제 정) 이 규정은 1981년 12월 1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(개 정) 이 규정은 2016년 08월 0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(개 정) 이 규정은 2021년 0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(개 정) 이 규정은 2022년 02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5. (개 정) 이 규정은 2022년 07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6. (개 정) 이 규정은 2023년 07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7. (개 정) 이 규정은 2025년 08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